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1. 3. 김동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 1.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동아의원)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

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난해 6월 법 제화됐음. 이와 관련해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 돼 올해 1년을 맞음.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재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업(2024년 추산 13,033개)의 0.3%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임. 특히 지난 9월 의정부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사업자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부정수급자로 내몰려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음.

이에 법제화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비 부담 없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 비용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므로 경비 지원에 관한 의무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김동아의원·이연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